

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49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9. 15.

발 의 자 : 조명희 · 하영제 · 성일종
배준영 · 이명수 · 박대수
최순식 · 황보승희 · 박 진
박성민 · 권은희 · 유경준
김승수 · 태영호 · 홍문표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·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·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(業)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.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법원에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으나, 최근 적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. 더불어서,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하여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

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,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,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며,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조달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이하고자 함(안 제2조제5호, 제5조의2 및 제6조제3항 신설).

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금”을 “자금[가상자산(「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포함한다]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장래에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손해배상책임)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.

-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
2.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의 피해규모
3.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해당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
4.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의 정도

5. 유사수신행위의 기간·횟수
6.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
7.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

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조달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(이하 이 조에서 “조달액”이라 한다)이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. 이 경우 조달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

1. 조달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2. 조달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일 때: 3년 이상의 유기징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유사수신 행위”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·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·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<u>자금을</u> 조달하는 것을 업(業)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자금 [가상자산(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포함한다]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장래에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</u>
<u><신설></u>	<u>제5조의2(손해배상책임)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</u>

제6조(벌칙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.

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

2.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의 피해규모

3.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해당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

4.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의 정도

5. 유사수신행위의 기간·횟수

6.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

7.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

제6조(벌칙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조달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(이하 이 조에서 “조달액”이라 한다)이 10억원 이상일 때에는
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
중처벌한다. 이 경우 조달액 이
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
수 있다.

1. 조달액이 100억원 이상일
때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
역

2. 조달액이 10억원 이상 100억
원 미만일 때: 3년 이상의 유
기징역